

제22조 시험위원장은 급제자의 이름과 시험성적을 조선총독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본령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규칙(1916년 10월 9일 조선총독부령 제88호)

제1조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은 이를 나누어서 삼종으로 한다. 제1종은 소학교·보통학교의 훈도, 제2종은 보통학교의 훈도, 제3종은 보통학교의 부훈도에 적합한 학력(學力)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은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위원이 시행한다.

위원 중에 위원장 1인을 두고 시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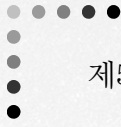
위원장, 위원은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공립학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 시험은 매년 10월에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임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을 시행할 날짜, 장소는 미리 조선총독부관보에 공고한다.

제4조 아래의 각 호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2. 파산, 가자분산(家資分散) 선고를 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복권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자
3. 징계를 받고 면관, 면직된 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교원면허장 박탈 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5조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원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학교·보통학교교원시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교원면허장이나 졸업증서를 가진 자는 그 사본
2. 호적등본, 민적등본
3. 앞 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는 관서의 증명서

제6조 수험출원자는 수수료로 1원을 수입인지를 사서 원서에 붙여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7조 시험에 관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수험을 정지하거나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기간을 정해 시험 응시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8조 제1종시험의 시험과목과 그 수준은 아래와 같다.

수신	수신의 요지
교육	교육학, 교수법, 조선교육법규, 학교관리법, 교육실습
국어·한문	국어(일본어) 읽기, 해석, 작문, 문법, 한문 읽기, 해석
역사	일본역사, 외국역사
지리	일본지리, 외국지리, 지문(地文)
수학	산술(주산을 포함), 대수, 기하
박물(博物)	식물, 동물, 광물, 생리, 위생의 대요(大要), 실험
물리·화학	물리, 화학, 실험
법제·경제	법제·경제의 대요
습자	해서, 행서, 초서
도화	실물화, 기하화
수공	제종(諸種)의 세공(細工), 간이 기구·기계 제작법

음악	창가, 악기 사용법
체조	체조, 교련, 놀이
농업	농업 대의(大意)
상업	상업 대의, 부기
가사	가사 대의, 가계부기
재봉·수예	보통 의류의 재봉, 편물(編物)
조선어	
조선사정	

법제·경제, 수공, 농업, 상업은 남자에 한하고 가사, 재봉·수예는 여자에 한한다.

농업, 상업은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소학교훈도 자격만을 얻으려는 자는 당분간 조선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제2종시험의 시험과목과 그 수준은 아래와 같다.

수신	수신의 요지
교육	교육학, 교수법, 조선교육법규, 학교관리법, 교육 실습
국어	읽기, 해석, 작문, 어법, 문법
조선어·한문	읽기, 해석, 작문, 회화, 쓰기
역사	일본역사
지리	일본지리, 외국지리, 지문(地文)
수학	산술(주산을 포함) 대수 대의(大意), 기하 대의
이학(理學)	식물, 동물, 광물, 물리, 화학, 생리·위생 대요, 실험
실업	농업 대의, 상업 대의



법제·경제	법제·경제 대의
습자	해서, 형서
도화	실물화
수공	제종(諸種)의 세공
음악	창가, 악기 사용법
체조	체조, 교련, 놀이
가사	가사 대의, 가계부기
재봉·수예	보통 의류의 재봉, 편물, 조화(造花), 자수(刺繡)

실업은 농업, 상업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실업, 법제·경제, 수공은 남자에 한하고 가사, 재봉·수예는 여자에 한한다.

제10조 제3종시험의 시험과목과 그 수준은 아래와 같다.

수신	수신의 요지
교육	교육학, 교수법, 조선교육법규의 대요(大要), 교육 실습
국어	읽기, 해석, 쓰기, 작문, 회화, 습자
조선어·한문	읽기, 해석, 작문
산술	필산(筆算)
이학	식물, 동물, 물리, 화학(광물 포함), 생리·위생 대 요, 실험
체조	체조, 교련, 놀이
도화	실물화
재봉·수예	보통 의류의 재봉, 간단한 수공

실업은 농업, 상업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실업은 남자에 한하고, 재봉·수예는 여자에 한한다.

제11조 제2종·제3종시험은 조선인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을 칠 경우 제8조, 제10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에 관해 그 시험 정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3.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4.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5. 앞 각호 외에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

제13조 시험에 급제한 자에게 증명서를 수여한다.

시험에 급제한 자의 성명은 조선총독부관보에 공고한다.

제14조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한 과목이나 여러 과목의 성적이 우수할 때는 그 과목의 성적에 관해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다.

앞 항의 증명서를 받은 자로서 3년 이내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때 그 증명서에 기재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본령에 규정된 시험의 급제자는 사립학교교원 자격에 관해서 사립학교 교원시험에 합격한 자로 간주한다.

<부칙>

본령은 19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VI

# 훈기 · 포상 · 은사금

### 1. 문무관 서위 · 진계 내칙(1900년 3월 시행, 1915년 8월 개정)

제1조 문무관의 서위(敍位) · 진계(進階)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내칙에 따른다.

제2조 고등관이 신임으로 관등이 올랐을 때는 별표에 따라 첫 서위의 위기(位記)를 하사한다.

제3조 고등관이 신임으로 관등이 올랐을 때 이미 첫 서위가 상당 이상의 위(位)인 자는 그 위계(位階)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앞 조의 예에 비추어 진계할 수 있다.

제4조 고등관 재직 만 10년 이상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근로(勤勞) 상황에 따라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특별히 위(位) 1급(級)을 올릴 수 있다. 단 최고의 위를 넘을 수 없다.

1. 병이 위독할 때
2. 폐관, 퇴관, 퇴직할 때
3. 육해군장교 예비(豫備), 후비(後備)(재직자 제외), 퇴역할 때



앞 항에 따른 진계 후 임관·취직한 자는 재직연수가 다시 만 10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앞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2위 이상으로 진계하는 것은 제1항에 한하지 않는다.

제4조의 2 고등관 재직 만 10년 이상으로서 사망할 때는 위독할 때 진계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그 근로상황에 따라 사망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생전(生前)의 날에 특별히 위(位) 1급을 추승(追陞)할 수 있다. 단 최고의 위를 넘을 수 없다.

종2위 이상으로 추승하는 것은 앞 항에 한하지 않는다.

제5조 직임대우자는 재직 만 2년 후 정5위에 서(敍)하고, 만 5년을 지나 1계(階)를 올릴 수 있다.

제6조 주임대우자로서 관등에 준해 그 대우를 받는 자는 재직 만 3년 후에 제2조의 예에 비추어 첫 서위에 상당하는 위(位)에 서(敍)할 수 있다. 그 후 만 6년마다 진계하고 상당한 위(位)로부터 서위가 2계(階) 오르면 그친다. 기타 대우자는 재직 만 3년 이상을 지나서 정7위 이하에서 처음으로 서위하고 그 후 만 6년마다 진서(進敍)하여 2계(階) 오르면 그친다.

제7조 판임문관 재직 만 20년 이상, 판임무관 재직 만 15년 이상 근로한 자는 아래의 표준에 따라 서위를 내린다.

정7위 판임문관특별봉을 받는 자, 판임관 종7위에 서(敍)해져 만 5년 이상 경과한 자

종7위 판임관 1등, 2등인 자

정8위 판임관 3등인 자

종8위 판임관 4등인 자

앞 항에 따라 서위된 자로서 봉급이 증가하고 등급이 오를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위(位)로 진계할 수 있다.



정7위에 서(敍)해진 후 만 10년을 경과하고 근로가 현저한 자는 종 6위로 진계할 수 있다.

제8조 진계연수(進階年數)에 문관은 휴직과 대명(待命), 무관은 대명, 휴직, 정직, 예비역, 후비역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단 대명, 예비역, 후비역이라도 재직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8조의 2 본관(本官)과 대우자의 재직연수는 상호 통산한다. 통산은 아래의 각호에 따른다.

1. 칙임·주임·판임대우의 재직연수는 각각 본관에 대해 1/3을 감(減)한다.
2. 판임관의 재직연수는 고등관에 대해 1/2을 감한다.
3. 판임대우의 재직연수는 고등관에 대해 2/3를 감한다.
4. 주임대우의 재직연수는 칙임관에 대해 2/3를 감한다.
5. 주임대우의 재직연수는 칙임대우에 대해 1/2을 감한다.
6. 판임대우의 재직연수는 칙임·주임대우에 대해 1/2을 감한다.
7. 판임관의 재직연수는 칙임·주임대우에 대해 1/3을 감한다.
8. 칙임관·주임관의 재직연수는 각기 상급 대우에 대해 1/3을 감한다.
9. 주임관의 재직연수는 친임대우에 대해 1/2을 감한다.
10. 상급 관계(官階)와 그 대우의 재직연수는 하급 관계와 그 대우에 대해 증감하지 않는다.

앞 항 제1호, 제4호는 제4조와 제4조의 2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판임문관과 판임무관의 재직연수는 상호 통산한다.

신궁(神宮)과 관(官)·국폐사(國幣社) 직원, 궁내관, 그 대우자의 재직연수는 본직의 서위연수에 통산한다. 통산방법은 제1항 각호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진계연수는 징계·징벌·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 아래의 표준에



따라 그것을 제하고 계산한다. 단 징계·징벌을 면제받은 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징계·징벌

감봉·감급(減級)	1개년
15일 이상의 근신·영창·구금	1개년
30일 이상의 금족(禁足)	1개년
전소(轉所)	1개년 반
정직(停職)	2개년
면관(免官)·면직(免職)	기왕의 전 연수(年數)

형벌

1년 미만의 금고	1개년
실관(失官)	기왕의 전 연수

**2. 조선인 관리의 서위에 관한 건(1920년 4월 내각각의 제62호)**

하나. 조선인 관리의 서위에 관한 재직연수는 통감부 사무개시일, 곧 1905년 2월 1일부터 기산점(起算點)으로 한다.

하나. 조선군인에 대한 재직연수는 앞 항의 재직연수에 통산한다.

**3. 서훈내칙(1892년 12월 시행, 1919년 5월 개정)**

제1조 대훈위(大勳位) 국화장(菊花章)은 위훈(偉勳)이 있는 자에게 서사(敍賜)한다.

제2조 대훈위 국화장의 경식(頸飾)은 본장(本章)과 함께 하사하거나 본장을 가진 자에게 특별히 하사할 수 있다.

제3조 훈1등 육일동화장(旭日桐花章)은 특히 훈공(勳功)이 현저한 자에게 서사한다.

제4조 훈1등 육일장(旭日章) 이하 보관장(寶冠章)은 훈공이 현저한 자에게 서사한다. 단 제16조에 기재된 자는 이 예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 훈1등 서보장(瑞寶章) 이하는 훈공이나 오랫동안 훈로(勳勞)가 있는 자에게 서사한다.

제6조 문무관, 궁내관이 오랫동안 근로하여 그 성적이 현저할 때는 이를 감사(勘査)하여 훈등을 서(敍)한다. 훈로를 쌓음에 따라서 다시 진급(進級)시킨다.

제7조 제6조의 주의(主意)에 따라 훈1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제대신(諸大臣)

추밀원 의장

육해군 대장

위의 훈2등을 받은 후 만 5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앞 항에 기재된 자를 제외한 친임관(척임)

위의 훈2등을 받은 후 만 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해군 중장

고등관 1등(척임)

위의 훈2등을 받은 후 만 10년 이상 친임관대우를 받은 자는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8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2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제대신

추밀원 의장



육해군 대장

위의 봉직 이래 만 3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앞 항에 기재된 자를 제외한 친임관(칙임)

위의 봉직 이래 만 5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해군 중장

고등관 1등(칙임)

위의 훈3등을 받은 후 만 7년 이상 친임관대우를 받은 자는 만 5년 반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해군 소장과 그 상당관(相當官)

고등관 2등(칙임)

위의 훈3등을 받은 후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9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3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육해군 중장

고등관 1등(칙임)

위의 봉직 이래 만 8년 이상 친임관대우를 받은 자는 만 6년 반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육해군 소장과 그 상당관

고등관 2등(칙임)

위의 훈4등을 받은 후 만 4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3등(주임)

위의 훈4등을 받은 후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군 중좌, 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4등(주임)

위의 훈4등을 받은 후 만 9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10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4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육해군 소장과 그 상당관  
고등관 2등(칙임)  
위의 봉직 이래 만 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육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3등(칙임)  
위의 훈5등을 받은 후 만 6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군 중좌, 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4등(주임)  
위의 훈5등을 받은 후 만 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해군 소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5등(주임)  
위의 훈5등을 받은 후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5. 육해군 대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6등(주임)  
위의 훈5등을 받은 후 만 9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11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5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육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3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4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육군 중좌, 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4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5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해군 소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5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6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해군 대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6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5. 육군 중위, 해군 대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7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6. 육해군 소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8등(주임)

위의 훈6등을 받은 후 만 9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12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6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육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3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2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육군 중좌, 해군 대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4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2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해군 소좌와 그 상당관

고등관 5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3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해군 대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6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3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5. 육군 중위, 해군 대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7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4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6. 육해군 소위와 그 상당관

고등관 8등(주임)

위의 봉직 이래 만 14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7. 고등관 9등(주임)

위 봉직 이래 만 15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8. 육해군 준사관

판임관 1등

위의 훈7등을 받은 후 만 10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13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7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육해군 준사관

판임관 1등

위의 훈8등을 받은 후 만 6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육군 조장(曹長)과 그 상당관

해군 하사 1등

판임관 2등

위의 훈8등을 받은 후 만 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3. 육군 1등 군조(軍曹)와 그 상당관

해군 하사 2등

판임관 3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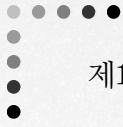
위의 훈8등을 받은 후 만 8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4. 육군 2등 군조와 그 상당관

해군 하사 3등

판임관 4등

위의 훈8등을 받은 후 만 9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제14조 제6조의 주의에 따라 훈8등에 서(敍)할 자는 아래와 같다.

1. 판임관 1등

위의 봉직 이래 만 17년 이상 성적이 있는 자

2. 판임관 2등 이하는 각 등에 1년을 더한다.

3. 육해군 준사관, 하사의 첫 서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훈3등 이하의 훈장을 받은 자가 친임관으로 될 때는 만 1년 이상이면 훈2등으로 오를 수 있다.

훈4등 이하의 훈장을 받은 자가 고등관 1등으로 될 때는 친임관대우를 받는 자는 5개월 이상이면 훈5등, 만 6개월 이상이면 훈4등, 만 1년 이상이면 훈3등까지, 그 외는 만 6개월 이상이면 훈5등, 만 6개월 이상이면 훈4등, 만 1년 반 이상이면 훈3등까지 오를 수 있다. 훈5등 이하의 훈장을 받은 자가 고등관 2등으로 될 때는 만 6개월 이상이면 훈4등까지 오를 수 있다.

훈7등 이하의 훈장을 받은 자가 고등관 1등이나 2등으로 될 때는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8항의 실제 기간의 1/10 이상, 주임관으로 될 때는 실제 기간의 1/5 이상이면 훈6등까지 오를 수 있다.

제16조 아래에 게재된 자로서 성적이 현저할 때는 그 가진 훈장과 동급의 육일장이나 보관장을 하사한다.

1. 제대신, 추밀원 의장, 육해군 대장은 훈1등 서보장을 받고, 또 이미 훈1등 서보장을 받은 자는 같은 관(官)에 임명되어 계속 정근하는 것을 만 6년 이상, 그 외의 친임관은 만 7년 이상, 친임관대우를 받은 자는 만 7년 이상, 고등관 1등은 만 8년 이상으로 한다.

2. 고등관 2등은 훈2등 서보장을 받고, 또 이미 훈2등 서보장을 받은 자가 같은 관에 임명되어 계속 정근하는 것을 만 10년 이



상으로 한다.

3. 고등관 3등은 훈3등 서보장을 받고, 또 이미 훈3등 서보장을 받은 자가 같은 관에 임명되어 계속 정근하는 것을 만 9년 이상, 고등관 4등은 만 10년 이상으로 한다.
4. 판임관 1등은 훈6등 서보장을 받고, 또 이미 훈6등 서보장을 받은 자가 같은 관에 임명되어 계속 정근하는 것을 만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훈공이 현저하여 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히 훈등에 서(叙)하거나 진급하는 자는 이 규정에 한하지 않는다.

제18조 관직에 있지 않는 자로서 학술·공예·문학에서 매우 유익한 발명이나 개량, 저술을 하고,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국토를 발견하거나 광대한 전야(田野)를 개간하고, 중요한 도로·제방·교량을 축조하거나 성대한 학교·병원을 건설하거나 농·공·상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교육의 확장이나 자선(慈善)에 힘을 쏟고,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재난을 돕거나 방역에 종사하는 등 그 공이 크고 성적이 현저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훈등을 서(叙)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제19조 제6조에 따라 서훈을 요청해야 할 자가 있을 때는 소관 장관은 본인의 이력서를 갖추어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할 수 있다. 소관 장관에게 상주 권한이 없을 때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서훈을 요청해야 할 자가 있을 때는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갖추어 소관 장관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상주해야 한다.

제20조 관리은급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3조 제2항에 따라 퇴관한 자, 육해군장교분한령에 따라 예비·후비·퇴역한 자, 비직(非職)



이나 휴직을 명받은 자는 재직 중에 근로성적이 있고, 또 이미 본칙의 정한(定限)에 이르렀을 때는 서훈한다. 이 경우 특히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단 관리은급법 제3조, 군인은급법 제4조 제2항, 제3항에 기재된 자는 아직 정한(定限)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으로부터 서훈을 전의(詮議)해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상훈국 총재는 각 청(廳)의 상주와 신청을 검사하여 의정관(議定官)의 의결에 부친 후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상주한다.

제23조 삭제

#### / 調査例則 /

제24조 근무연수는 아래의 예에 비추어 계산한다.

1. 칙임관은 칙임이 된 날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주임관과 판임관은 모두 같다. 등외의 판임·주임·칙임 등을 역임하고 진급한 자는 각기 전임(前任) 연수를 후임(後任)의 반수로 통산할 수 있다. 종군년(從軍年)을 가산할 때도 역시 이 예에 따른다.
2. 유등출사(有等出仕)는 본관의 산수(算數)와 같다. 준(准)칙·주·판임, 칙·주·판임대우, 근무(勤務), 무등출사(無等出仕), 준관등시보견습, 기타 관제·직제 외의 조종의 명의(名義)를 만들어 사용하고 관리 취급을 하는 자는 각 본임(本任)에서 1/3을 절산(折算)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단 관직의 명의를 있어도 일반관리 취급을 받지 않는 자나 준등외(准等外), 고용인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준칙·주·판임, 칙·주·판임대우, 근무명의회자(勤務名義者),

명예관으로서 일상 직무에 복무하지 않는 자는 각 본임에서 1/2을 절산한다.

준칙·주·관임, 칙·주·관임대우, 근무명의자를 서(敍)할지 논의할 때는 유등자(有等者)는 각 본관(本官)의 격에 따르고 무등자(無等者)는 각 본임(本任) 최하급의 격에 따른다.

제25조 연월 계산은 1년은 만 12월(구력의 윤달은 제외), 1월은 15일의 전후로써 구분한다.

제26조 종군한 자는 군인은급법에 따라 종군년(從軍年)을 가산할 수 있다. 단 일본 국외의 주둔지에 있거나 일시 출정군으로 간주할 경우 의정관의 의결로서 취사(取捨)한다.

제27조 폐관(廢官)·폐청(廢廳) 기타 퇴관·퇴직 후 임관한 자, 예비·후비·국민병역(國民兵役)으로 소집된 자, 지원하여 국민군에 편입된 자는 전후 연수를 통산할 수 있으나 복무기율에 의해 잘못을 지적받거나 징계처분, 형사재판으로 면관된 자, 퇴관 후 황실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국사범(國事犯)에 관한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구율(舊律)에서 제족(除族), 징역판결의 형을 받은 자는 임관하더라도 전관(前官) 연수를 통산할 수 없다.

제28조 삭제

제29조 비직, 휴직, 정직, 대명, 무임소(無任所) 외교관, 무임소 영사의 연월(단 겸관인 자는 겸관에 따르고 별도로 근무를 명받은 자는 제24조 제2항을 따름), 면관 후의 어용체제(御用滯在) 중은 계산에서 뺀다. 폐관·폐청 때에 종전대로 사무를 취급하거나 구관(舊官) 사무의 인수인계를 특별히 명받은 시간은 재관자와 같이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제30조 관에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자는 위계와 봉급을 보고 유등관(有等



官)에 비준하여 산정한다.

제31조 징계례(懲戒例)에 따른 벌봉(罰俸) 1개월 반 이하를 부과받았을 때는 근무연수의 반년을 감산(減算)하고, 벌봉 2개월 이상을 부과받았을 때는 1년을 감산한다. 몇 번 이상은 모두 이 예에 준한다. 판사징계법에 의거할 때는 아래대로 감산한다.

감봉	6월 미만	반년
	6월 이상	1년
전소(轉所)		1년 반
정직	6월 미만	2년
	6월 이상	2년 반

1897년 1월 12일 전에 징계처분에 처해진 자는 감산하지 않는다. 구율에 저촉된 자는 아래의 예에 비추어 감산한다. 단 무관의 감산법은 육해군에서 별도로 정한다.

형명	형기	감산연수
근신, 속죄	20일 이상	반년
폐문(閉門), 속죄	50일 이상	1년
향관(降官)		1년 반
벌봉	5개월 이하	1년 반
벌봉	6개월 이상	2년

제32조 1871년 11월 부현개치(府縣改置) 이전의 번직(藩職)과 현무(縣務)에 봉사한 시간은 빼고 계산한다.

제33조 서훈내칙에 관한 취급수속은 상훈국 총재가 정하여 각 청에 통첩한다.

#### 4. 서위서훈내신취급수속(1914년 11월 시행)

제1조 서위서훈내신 취급은 문무관서위진계내칙이나 서훈내칙에 정해진 것 이외에 본 수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서훈내칙에 게재된 등차(等差)와 기한은 오랫동안 근로하여 성적이 현저한 자를 기다리는 이유로서 가령 기간을 다 채워도 성적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자는 물론이고 평소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해 직무태만이 많거나 누차 징계를 받고, 그 외에 품행을 상의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는 연한에만 구애받아 인선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서위서훈내신서에 첨부하는 이력서는 별기(別記) 서식에 따라 임면출척(任免黜陟), 봉급의 증감, 상벌의 요령, 서위·서훈·수작 등 훈공·훈로(勳勞)의 성적을 모아야 할 사항을 글자가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4조 서위서훈 내신 후에 전면출척(轉免黜陟), 사망, 기타 신분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서훈내신서에는 별기 서식에 따른 명부를 첨부한다.

명부는 진급과 초서(初叙)로 구분하여 진서자(進叙者)는 훈등, 초서자는 관등순으로 기재한다.

제6조 병이 위독하거나 기타 긴급한 경우 명부와 이력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서식 생략)



## 5. 조선인 관리의 정례서훈에 관한 건(1920년 4월 내각각의 제61호)

하나. 조선인 관리의 정례서훈에 관해서는 통감부 사무 개시일, 즉 1905년 2월 1일을 기산점(起算點)으로 한다.

하나. 조선군인에 대한 재직기간은 앞 항 정례서훈의 정한(定限) 중에서 통산한다.

## 6. 서위훈내신에 관한 건

(1914년 11월 1일 조선총독부내훈 제29호)

중추원의장

체신국장관

고등법원장

고등법원검사장

복심법원장

복심법원검사장

전옥(典獄)

경무총장

의원장(醫院長)

제생원장(濟生院長)

권업모범장장(勸業模範場長)

중앙시험소장

영림창장(營林廠長)

평양광업소장

도장관

세관장

관립학교장

부하직원과 소속관서 직원으로서 「문무관서위진계내칙」이나 「서훈내칙」의 정규(定規)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서위서훈내신취급수속」에 따라 내신(內申)한다.

1914년 11월 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寺内正毅)

## 7. 1914년 조선총독부내훈 제29호 적용방법 건

조선총독부내칙 제8호

수역혈청제조소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위원장

1914년 조선총독부내칙 제29호는 수역혈청제조소장과 고등토지조사위원회위원장에 적용한다.

1919년 4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하세가와(長谷川好道)

조선총독부내칙 제13호

전매국장



경찰관강습소장

수산시험장장

1914년 조선총독부내칙 제29호는 전매국장, 경찰관강습소장, 수산시험장장에 적용한다.

1921년 8월 1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齋藤實)

### 조선총독부내칙 제20호

지방법원장

지방법원검사정

임야조사위원회위원장

1914년 조선총독부내칙 제29호는 지방법원장, 지방법원검사정, 임야조사위원회위원장에 적용한다.

1921년 10월 25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齋藤實)

## 8. 훈장수여수속의 건(1920년 5월 24일 관비 제146호)

이번 조선총독부내훈 제12호로서 1914년 조선총독부내훈 제16호 사령위 기훈장류수여 수속(辭令位記勳章類授與手續)을 폐지하고, 지금부터 훈장수여에 관해서는 별지 수속에 따르도록 양지하시고 통첩해 주십시오.



### 훈장수여수속

1. 훈장을 교부할 때는 적당한 식을 만들어서 수여하도록 한다.
2. 경성에 근무하는 본부(本府) 고등관, 소속관서의 장에 교부하는 훈장은 본부에서 총독에게 수여하고 총독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정무총감이 대신 수여한다.
3. 앞 항에 해당하는 직원에 교부하는 훈장은 본부에서는 각 국장, 관방 각 부·과장에게, 그 외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 수여한다.
4. 경성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교부하는 훈장에 대해서는 본 수속을 생략한다.

### 9. 서위조례(1887년 5월 6일 칙령 제10호)

제1조 무릇 위(位)는 화족, 칙임관, 주임관,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 표창할 효적(效績)이 있는 자를 서(敍)한다.

제2조 무릇 위는 정1위부터 종8위에 이르는 16계(階)로 한다.

제3조 무릇 위는 종4위 이상은 칙수(勅授)하고 궁내대신이 올린다. 정5위 이하는 주수(奏授)로 하고 궁내대신이 선(宣)한다.

제4조 유위자(有位者)가 사형, 징역, 무기나 3년 이상의 금고에 처해졌을 때는 그 위를 잃는다.

유위자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상에 따라 그 위를 잃는다.

1. 집행유예형을 받았을 때
2. 3년 미만의 금고에 처해졌을 때
3. 징계의 재판이나 처분으로 면관, 면직되었을 때



4. 소행이 바르지 못하여 유위자의 면목을 더럽혔을 때

앞 2항의 규정에 따라 위를 잃은 자는 위기(位記)를 반상(返上)한다.

제4조의 2 유위자가 법령에 의해 구금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었을 때는

그 기간에 위에 속한 예우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다. 보석, 책부(責付), 가출옥, 형의 집행유예 기간도 역시 같다.

제5조 무릇 위는 종4위 이상은 작(爵)에 준한 예우를 누리고 그 준예(准例)는 아래와 같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종1위	정2위	종2위	정·종3위	정·종4위

제6조 작과 위를 같이 갖고 있는 자는 높은 것에 따른 예우를 향유한다.

## 10. 조선귀족의 서위에 관한 건

(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6호)

서위조례는 조선귀족의 서위에 관해 준용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11. 포장조례(1881년 12월 7일 태정관포고 제63호)

제1조 무릇 자기의 위함을 돌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자, 효자·순손(順

孫)·절부(節婦)·의복(義僕) 등에서 덕행이 탁월한 자, 실업에 정

진하여 민중의 모범이 되는 자, 학술·기예상에서 발명·개량·저술, 교육·위생·자선·방역사업, 학교·병원의 건설, 도로·하거(河渠)·제방·교량의 수축(修築), 논밭의 개간, 삼림의 재배, 수산의 번식, 농상공업의 발달에 관해 공중의 이익을 높여 성적이 현저한 자, 공동사무에서 근면하고 근로 효과가 현저한 자, 공익을 위하여 사재(私財)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를 표창하기 위해 아래 네 종류의 포장(褒章)을 정한다.

홍수포장(紅綬褒章)

위를 자기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자에 하사한다.

녹수포장(綠綬褒章)

위를 효자·순손(順孫)·절부(節婦)·의복(義僕) 등에서 덕행이 탁월한 자, 실업에 정진하여 민중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하사한다.

남수포장(藍綬褒章)

학술·기예상에서 발명·개량·저술, 교육·위생·자선·방역사업, 학교·병원의 건설, 도로·하거(河渠)·제방·교량의 수축(修築), 논밭의 개간, 삼림의 재배, 수산의 번식, 농상공업의 발달에 관해 공중의 이익을 높여 성적이 현저한 자, 공동사무에서 근면하고 근로 효과가 현저한 자에게 하사한다.

감수포장(紺綬褒章)

공익을 위하여 사재(私財)를 기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하사한다.

제2조 본 조례에 따라 표창해야 할 자가 단체일 때는 포상(褒狀)을 하사한다.

제3조 이미 포장을 받은 자가 다시 이상과 같은 실행으로 포장을 받을 때는 그 때마다 장식판 한 개를 수여하여 그 장(章)의 수(綬)에 부착



함으로써 표식을 삼는다.

앞 항의 장식판이 5개 이상이 되었을 때 5개마다 별종의 장식판 한 개를 바꾸어서 하사한다.

제4조 포장은 본인에 한해서 종신토록 패용할 수 있다.

제5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을 하사할 자에게 금·은·목배나 금원(金圓)을 함께 하사한다.

제6조 제1조의 규정에 준하는 특기할 행동을 한 자에게 금·은·목배, 금원이나 포상(褒狀)을 하사한다.

제7조 본 조례에 따라 표창받을 자가 사망했을 때는 금·은·목배, 금원이나 포상을 그 유족에게 하사하고 추상(追賞)한다.

제8조 제6조에 따른 행상(行賞)으로서 금·은배의 하사, 20원을 넘는 금원의 하사와 천 원 이상의 기부에 대한 포상의 하사는 상훈국 총재가 진행(專行)한다.

제6조에 따른 행상(行賞)으로서 목배의 하사, 20원 이하 금원의 하사와 천 원 미만의 기부에 대한 포상의 하사는 지방장관이 진행한다.

제9조 본 조례중 지방장관에 속한 직무는 조선, 대만, 관동주, 화태, 남양군도, 외국에서는 각각 조선총독, 대만총독, 만주국주차특명전권대신, 화태장관, 남양청장관, 영사관이 행한다.

<부칙>(1920년 칙령 제24호)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1883년 태정관포고 제1호는 폐지한다.

## 12. 포장조례취급수속(1894년 1월 6일 각령 제1호)

제1조 포장조례에 따라 포장(褒章)을 하사해야 할 자가 있을 때는 지방장관이 주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주무대신은 그 당부(當否)를 심사하여 상훈국 총재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제2조 상훈국 총재는 보고서를 다시 조사하여 포장을 하사해야 할 자라고 인정할 때는 주청하고 재가를 얻는다. 동경에 있는 자는 직접 주고 그 외에는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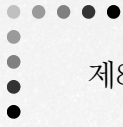
제3조 외국인에게 포장을 하사할 때는 주무대신과 외무대신이 같이 서명하여 보고하고, 수여할 때는 외무대신을 경유하여 전달한다. 공적·사적 고용에 관계된 자는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포장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훈국 총재의 전행(專行)에 속한 상을 수여해야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방장관이 주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주무대신은 그 여부를 심사하여 상훈국 총재에게 보고하고 수여할 때는 주무대신을 경유하여 전달한다.

제5조 상의 수여에 관해 둘 이상의 지방장관이 보고하거나 전행할 경우 관계 지방장관의 협의에 따라 하나의 지방장관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 외국인에 대한 금·은·목배, 금원(金圓), 포장의 하사는 내국인에 예에 따른다. 단 제실의 귀빈이나 외국사신에 대한 하사는 외무대신이 상훈국 총재에게 보고하며 수여할 때는 외무대신을 거쳐서 전달한다.

제7조 포장조례에 따라 표창할 자를 보고한 후 상을 수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방장관은 신속히 이를 주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주무대신은 상훈국 총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본령 중 주무대신의 직무는 조선, 대만, 관동주에서는 각각 조선총독, 대만총독, 만주국주차특명전권대사가 하고, 지방장관의 직무는 조선, 대만, 관동주, 화태, 남양군도, 외국에서는 각각 조선총독, 대만총독, 관동장관, 화태청장관, 남양청장관, 영사관이 이를 행한다.

<부칙>(1920년 각령 제1호)

본령은 포고일부터 시행한다.

명치 1883년 태정관달 제17호 「금은목배금원하사수속」과 1871년 각령 제13호를 폐지한다.

### 13. 한국병합기념장제정의 건(1912년 3월 28일 칙령 제56호)

제1조 한국병합기념의 표장(表章)으로서 특별히 기념장을 만든다.

제2조 기념장의 도식(圖式)은 아래와 같다.

장(章) 황동(黃銅) 원형, 직경 1촌, 윤곽 내 앞면 상부에 국화 문양, 양측 테두리에 오동나무와 오얏나무 꽃그림, 뒷면 상부에 명치 43년, 하부에 8월 29일, 중앙에 한국합병기념장의 문자를 새긴다.  
고리 은원형(銀圓形), 수(綬) 직물폭 1촌 2푼, 중앙 홍색, 그 좌우 황색, 양끝 백색 기념장은 수를 이용하여 왼쪽 늑골에 찬다.

제3조 기념장은 아래에 열거한 자에게 수여한다.

1.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간여한 자와 한국병합사업에 수반하는 중요한 업무에 관여한 자
2. 한국병합 때 조선에 근무한 관리와 관리대우자, 한국병합 때

한국정부의 관리와 관리대우자

3. 종전 일한관계에서 공적이 있는 자

제4조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념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단 극형, 면관(免官), 면직(免職) 후 앞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금고(禁錮), 금옥(禁獄) 이상의 형에 처해졌을 때

2. 징계처분에 따라 면관, 면직되었을 때

제5조 기념장은 본인에 한해서 종신토록 패용하고 자손은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6조 기념장을 수여자가 수여 전에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대신주어 보존하게 한다.

제7조 기념장을 수여자의 명부는 상훈국에서 보존하고, 앞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기념장을 대신받은 자의 명부도 역시 같다.

(기념장 그림 생략)

#### 14. 조선경찰상여규정(1911년 6월 21일 조선총독부령 제76호)

제1조 경찰상여는 아래 각호 중의 하나에 관계되고, 특히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행한다.

1. 도주하는 죄수, 형사피고인의 수색과 체포

2. 비적의 토벌, 수색, 경계

3. 인명구호

4. 수재, 화재, 전염병유행, 기타 천재지변에 대한 방어구제

5. 급한 상황에 경찰관이나 그 직무를 행하는 자의 요청에 응하여



## 보조

제2조 경찰관이나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공로가 특히 현저할 때에 한해서 상여를 행한다.

제3조 경찰 상여를 나누어 아래의 세 종류로 한다.

1. 50원 이상 5백 원 이하의 특별상여
2. 50원 이상의 상여
3. 상장

제4조 제1조 제1호의 상여는 범죄의 사실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때는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행할 수 있다.

제5조 공로자상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망을 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었을 때 상여물 건수는 아래 순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수여한다. 단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는 남자는 여자에 우선하고, 어른이 아이에 우선한다.

1. 배우자
2. 동일 가계의 직계비속
3. 동일 가계의 직계존속
4. 동일 가계의 형제자매

제6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를 수여하지 않는다.

1. 공로자상여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경찰관,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징계처분으로 관직을 파면당했을 때
2. 경찰관,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간호 중이거나 압송 중에 도주하는 범죄인을 체포하지 않았을 때

제7조 경찰상여는 경무총장이 시행한다.

<부칙>



본령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본령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5. 임시은사금 배여(配與)에 관한 건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훈령 제46호)

각도장관, 부윤, 군수 전(殿)

이제야 지난날의 유고(諭告)에 따라 여기에 임시은사금 17,398천 엔을 조선 각도 12부 317군에 배여하고자 한다. 이것을 직접 관리할 책임을 맡아야 할 도장관, 부·군의 유사(有司)는 그 취지를 잘 생각하여 이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민력(民力) 휴양의 실적을 올리도록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제국정부가 이와 같은 거액의 국탕(國帑)<sup>1)</sup>을 조선 각도·부·군에 배여하는 사유는, 그 금액을 즉시 부·군의 사민(士民)에게 배분하여 이 은전으로 불과 일시적인 급함을 구하는데 있지 않다. 정부는 부·군의 사민이 다년간 적폐(積弊)의 재앙을 입고 많이 유리(流離)·곤돈(困頓)의 궁경(窮境)에 있음을 불쌍히 여겨 자금을 부·군에 배여하여 도장관에게 관리시키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사민에게 산업을 주고 교육의 발전을 보조하여 흉열(凶孽)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구제의 자본으로 제공하며, 부·군 사민에게 오래도록 그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지를 잘 체득하여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의 5분의 3은 수산(授産)에, 5분의 1.5는 교육에, 5분의 0.5는 흉열구제의 자금에 충당하는 방침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혹은 적절한 사업에 보조를 하며, 두루 사민을 구제함으로써 혜무(惠撫) 자양(滋養)의 본

---

1) 나라의 재산



의(本義)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원래 관리사용의 여하는 오로지 관리자의 경영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도, 대체로 다음 각항을 준수하는데 힘을 써서 그 사업의 성질과 경과를 핵사(覈査)<sup>2)</sup>하여 그 효력이 가장 정확하게 하여 그 경영이 가장 실정에 알 맞는 것으로 골라서, 흥열의 구제에 관해서는 가장 그 방법의 채택을 신중히 하며 이재자(罹災者)에게 진휼(賑恤)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 급여를 함부로 하여 사민에게 은혜가 지나쳐서 근로를 싫어하는 폐단을 낳아 혜무 자양의 본의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이상 훈령함.

다음

### 1. 수산(授産)

수산은 먼저 양반과 유생처럼 향산(恒産)이 없는 자에 대하여 산업을 주고자 하는데 주지(主旨)를 둔다. 이러한 자들을 혜휼(惠恤)하는데 첫째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경영 또는 보조해야 할 사업은 지방에 이미 소지(素地)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얼마간 소재하는 녹지(漉紙)<sup>3)</sup>나 양잠 같은 경영이 가장 쉽고 효과가 확실하며 아무리 가볍더라도 이것으로써 입에 풀칠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2. 교육

교육에서는 되도록 자금을 기본으로 하고 향교재산 기타 수입을 보태서 보통학교를 설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설립함에는 교사다운 사람을 얻고 기초가 확실하며 영속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

---

2) 밝혀서 조사함

3) 종이를 만들

다. 만약에 갑자기 그러한 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울 경우나 혹은 이미 설립한 학교가 있어서 새로이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사립학교를 보조하여 점차적으로 보통학교와 같은 정도로 추진하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 3. 흥열(凶孽)의 구제

흥열의 구제는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하고, 함부로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시행함에도 생업의 보조나 현물의 급여 등 시의에 알맞는 연구를 할 것을 요한다.

## 16. 임시은사금관리규칙(1910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제1조 1910년 8월 29일 칙령 제329호에 의하여 조선 각 부·군에 내려 준 임시은사금은 지방장관에게 관리시킨다.

제2조 임시은사금의 원금은 이것을 기금으로 하여 소비하지 못한다.

제3조 임시은사금은 대장(臺帳)을 비치하여 각 부·군별로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국채증권은 총독이 지정한 은행에 보호, 예치한다.

공채상환과 기금에 편입한 현금은 국채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단 국채증권으로 바꿀 때까지 현금으로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편저금예입이나 앞 항의 은행에 이자부예입을 한다.

제4조 임시은사금의 이자는 각 부·군의 수산(授産), 교육, 흥결(凶歎) 구제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제5조 지방장관은 부윤이나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시설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정리방법, 보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총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지방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군 두 곳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앞 조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장관은 매 연도 전에 각 부·군별로 임시은사금에 대한 수입지출의 예산을 정하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시은사금의 이자 잉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앞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이외의 잉여는 기금에 편입하기로 한다.

제9조 앞 조 제2항에 의하여 기금에 편입한 액수는 필요한 경우 총독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장관은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경과상황서를 첨부하여 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임시은사금의 수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17. 임시은사금의 수지에 관한 규정(1911년 3월 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제1조 임시은사금의 수지(收支)에 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지방비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임시은사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 임시은사금의 출납은 매 연도 경과 후 1월 이내로 하고 그 사무정리는 2월 이내로 한다.

제4조 도장관은 부하, 소속관리에게 위임하고 그 수입을 징수하여 지출명령을 낼 수 있다.

제5조 임시은사금의 현금은 도 소재지의 농공은행의 본점이나 지점, 출장

소에 당좌예금으로 한다.

제6조 도장관은 감사원을 명하고 매년 1회 이상 임시은사금의 회계를 검  
열한다.

제7조 임시은사금의 보관대장, 예산, 결산은 별지 제1호, 제3호 양식으로  
정리한다.

<부칙>

본 규정은 발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 생략)



## VII 치안·사상통제

### 1. 경찰범처벌규칙(1912년 3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0호)

제1조 아래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구류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거주지나 관리하지 않는 저택, 건축물, 선박에 숨어든 자
2. 일정한 거주지나 생업이 없이 배회하는 자
3. 몰래 매음을 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시도하는 자
4. 이유 없이 면회를 강청하거나 담판,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자
5. 지원·기부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자, 기예를 보여주거나 노동력을 공급해 주고 보수를 요구하는 자
6. 수익을 목적으로 억지로 물품, 입장권 등을 배부하는 자
7. 구걸을 하거나 구걸을 시키는 자
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9. 함부로 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업자의 납품 또는 입장을 강요하거나 물품매매의 위탁을 강요하는 자
10. 입찰을 방해하여 공동입찰을 강요하고 낙찰자에게 그 사업 이



익의 분배 또는 금품을 강요하거나 이유 없이 낙찰자에게서 이  
를 받는 자

11. 입찰자와 모의하여 경쟁 입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12. 재물을 매매 또는 노동력을 수급(受給)할 때, 부당한 대가를  
청구하거나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꾀하  
는 자
13. 다른 사람의 사업이나 사적인 일에 관해 신문·잡지 등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거나, 신문·잡지 등  
기타 출판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금품을 받고 그 밖의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자
14. 신청하지 않은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억지로 구매신청을 요구하는 자
15. 신청하지 않은 광고를 실어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억지로 광고  
신청을 요구하는 자
16.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하여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자
17. 다른 사람의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에 대해 장난을 치거나 방  
해를 하는 자
18.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돈 거래 등에 관여하거나 함부로 소  
송·쟁의를 권유·교사하여 분규를 야기하는 자
19. 함부로 사람들을 규합하여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하는 자
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한 문서·도서·노래를 게시·반  
포·낭독 또는 큰소리로 읊는 자
21. 사람을 현혹시키는 유언비어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
22. 함부로 길흉화복을 설파하거나 기도·주술 등을 하거나 부적  
을 주어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



23. 병자에게 주술·기도·주문, 정신치료 등을 시술하거나 부적·성수 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
24. 함부로 최면술을 시행하는 자
25. 일부러 허위 통역을 하는 자
26. 자기나 다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해 관허(官許)를 받은 것이라고 사칭하는 자
27. 관공직(官公職)·위기(位記)·훈작(勳爵)·학위·칭호를 속이거나 법령이 정하는 복식·휘장을 남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자
28. 관공서에 불성실한 진술을 하는 자, 그럴 의무가 있으면서 이유 없이 진술에 응하지 않거나 사정을 알고 불성실하게 대필하는 자
29. 본적·주소·성명·연령·신분·직업 등을 사칭하여 투숙하거나 승선하는 자
30.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
31. 관공서의 게시물 또는 관공서의 지시에 따라 게시한 금지조항을 어기거나, 그 설치와 관련한 방표(榜標)를 더럽히거나 철거하는 자
32. 경찰관서에서 특별히 지시 또는 명령을 내린 사항을 위반하는 자
33. 부정한 목적으로 사람을 숨겨주는 자
34. 도제(徒弟)·직공(職工)·비복(婢僕) 기타 노역자나 피고용자에게 이유 없이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자
35.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변을 가로막거나 추종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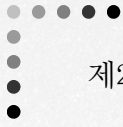
36. 제사·장례·축하의례, 그런 행렬에 장난을 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
37. 밤 1시 이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함부로 가무음곡(歌舞音曲), 기타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안면을 방해하는 자
38. 극장·공연장, 기타 공공 장소에서 참석자들을 방해하는 자
39.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드러눕거나 만취해 배회하는 자
40.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장소에 함부로 자동차·배, 기타 물건을 세워두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자
41.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장소에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점등, 기타 예방장치마련을 게을리하는 자
42. 관련부처의 독촉을 받고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수리 또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물건들의 보수를 게을리하는 자
43. 사람으로 붐비는 장소에서 제지에 응하지 않고 혼잡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
44. 출입을 금지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하는 자
45. 수재, 화재, 기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지에 응하지 않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나오지 않는 자. 공무원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으면서도 일부러 이에 응하지 않은 자
46. 거리에서 야간등 없이 자동차나 우마차를 사용하는 자
47. 허가 없이 길가나 하천가에 노점을 여는 자
48. 제지에 응하지 않고 길가에 음식물이나 기타 상품을 진열하는 자
49. 전선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전선의 장애가 될 만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50. 돌싸움이나 기타 위험한 장난을 하거나 하게 하는 자, 거리에서 공기총·취시(吹矢)와 같은 것을 가지고 놀거나 놀게 하는 자
51. 함부로 개나 기타 동물을 유인하거나 놀라게 하는 자
52. 맹수·광견 또는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는 짐승을 묶어두는 일을 게을리 하는 자
53. 투견, 투계를 하는 자
54.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소나 말 기타 동물을 학대하는 자
55. 위험성이 있는 정신병자의 감호(監護)를 게을리 하여 집밖에서 배회하게 하는 자
56.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옷통을 벗거나 나체로 다니는 자. 또는 둔부나 넓적다리를 노출하거나 기타 추태를 부리는 자
57. 노상방뇨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58. 다른 사람의 신체·물건 또는 이에 해를 끼칠 만한 장소에 물건을 던지거나 투척하는 자
59. 짐승의 사체, 대소변을 버리거나 처리를 게을리 하는 자
60. 사람이 마실 물을 오염시키거나 그 사용을 방해 또는 수로를 방해하는 자
61. 하천·도랑 또는 하수로를 막는 자
62. 도랑, 하수로를 훼손하거나 관계부처의 독촉을 받고 그 수리 또는 준설을 게을리 하는 자
63. 관계부처의 독촉을 받고 도로청소 또는 살수를 하지 않거나, 제지에 응하지 않고 결빙기에 도로에 살수하는 자
64. 관계부처의 독촉을 받고 굴뚝 개조·수리 또는 청소를 게을리 하는 자.
65. 함부로 다른 사람의 현관등이나 사찰·도로·공원, 기타 공용



- 시설의 상용등(常用燈)을 끄는 자
66. 사당·불당·예배당·묘소·비표(碑表)·동상, 기타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을 더럽히는 자
67.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가옥 기타 공작물을 더럽히거나 여기에 종이·벽보 등을 붙이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의 문패·간판·집을 팔거나 빌린 표찰, 기타 방표와 같은 종류의 것을 더럽히거나 철거하는 자
68.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전답·땅에서 채소나 과일을 따거나 화초를 꺾는 자
69.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물을 짓고 처마 기둥을 세워 목축을 하거나 경작, 기타 현 상태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행위를 하는 자
70. 전신주·교량·게시판, 기타 건축물에 함부로 소나 말을 묶어 두는 자
71. 교량이나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곳에 배나 뗏목을 메어 놓는 자
72. 함부로 다른 사람이 메어놓은 소나 말 기타 동물 또는 배나 뗏목을 풀어버리는 자
73. 함부로 다른 사람의 논과 밭으로 통행하거나 여기에 소나 말 각종 차(車)를 타고 들어오는 자
74. 자기가 점유한 곳 안에 노약자,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때문에 구조가 필요한 자나 사람의 사체, 죽은 태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속히 경찰관이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
- 앞 항의 사체, 죽은 태아에 대해 경찰관이나 그 직무를 담당하

- 는 자의 지휘 없이 그 현장을 변경하는 자
75. 사람의 사체나 죽은 태아를 은닉하거나 다른 물건과 뒤섞어 위장하는 자
76. 허가 없이 사람의 사체나 죽은 태아를 해부하거나 보존하려는 자
77. 일정한 음식물에 다른 물질을 섞어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자
78. 병으로 폐사한 동물의 고기 또는 설익은 과일, 부패한 음식물, 기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식재료로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
79. 매장해야 할 소·말·양·돼지·개 등의 사체를 파내는 자
80. 굵거나 삶거나 세척하거나 거죽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식용으로 제공할 물건을 덮개 없이 가게 앞에 진열하거나 행상을 하는 자
81.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자
82. 가옥 기타의 건축물 또는 인화되기 쉬운 물건 옆이나 산야에 함부로 불을 놓는 자
83. 석회, 기타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취급을 소홀히 하는 자
84. 함부로 총포를 발사하거나 화약 기타 갑자기 발포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노는 자
85. 허가 없이 인화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86. 허가 없이 극장, 기타 공연장을 여는 자
87. 도선(渡船)·교량, 기타 장소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의 통행료를 청구하거나 정해진 액수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하는 자 또는 이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통선(通船)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



제2조 본령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교사하거나 동조하는 자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벌한다. 다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보안법(1907년 7월 27일 법률 제2호)

제1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보지(保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집회, 다중의 운동, 군집(群集)을 제한·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경찰관은 앞 2조의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기계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경찰관은 가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도화의 게시와 반포와 낭독, 언어와 형용과 기타의 행위를 하여 안녕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해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거주하는 곳에서 퇴거를 명하고, 또 1개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범입(犯入)<sup>1)</sup>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제6조 앞 5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40 이상의 태형이나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에 처한다.

제3조의 물건이 범인의 소유에 관계된 때는 정상(情狀)에 따라 몰

1) 허가없이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것

수한다.

제7조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론과 동작이나 타인을 선동·교사·사용하며 타인의 행위에 간섭하여 치안을 방해한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고,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 본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간으로 한다.

제9조 본법의 범죄는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재판소나 항시재판소(港市裁判所)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0조 본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 3. 보안규칙(1906년 4월 17일 통감부령 제10호)

제1조 이사관은 일정한 주거나 생업을 갖지 않고 평상시 조포(粗暴)한 언론 행위를 일삼는 자에 대해 일정한 기한 내에 주거를 정하거나 생업을 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앞 항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주거를 정하거나 생업을 구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조 변호사나 이사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타인의 소송사항의 위탁을 받거나 이에 관여할 수 없다.

변호사나 이사관의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함부로 소송·쟁의를 권유·교사(教唆)할 수 없다.

제3조 명의(名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을 모집하거나 단체 가입을 권유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목적·방법을 갖추어 이사관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제4조 폭행, 협박, 사기와 관련된 수단으로 타인의 업무, 기타의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제5조 폭행, 협박, 사기와 관련된 수단으로 타인의 행위, 불행위 또는 재물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진퇴 의견에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재물을 매매하거나 노력을 수급(需給)할 때 폭행, 협박, 사기와 관련된 수단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증감할 수 없다.

제7조 재물의 대차(貸借), 그 주선을 할 때 이자, 수수료 기타 명의의 여하에 불구하고 부당한 고리(高利)나 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폭행, 협박, 사기와 관련된 수단을 사용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제9조 공직을 얻을 알선으로 금전, 기타의 보수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할 수 없다.

제10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1조 제1항의 명령을 어긴 자, 제1조 제2항이나 제3조를 어긴 자는 3개월 이하의 중금고(重禁錮)에 처하거나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제2조, 제7조, 제9조를 어긴 자는 6개월 이하의 중금고에 처하거나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를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중금고에 처하거나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본칙은 19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출판법(1909년 2월 23일 법률 제6호)

제1조 기계와 기타 어떠한 방법을 물론하고 발매·반포로 목적을 삼는 문서와 도화를 인쇄함을 출판이라 하고, 그 문서를 저술하거나 번역하거나 편찬하거나 도화를 만드는 자를 저작자라 하고, 발매·반포를 담당하는 자를 발행자라 하고, 인쇄를 담당하는 자를 인쇄자라 한다.

제2조 문서·도화를 출판하려는 때는 저작자, 그 상속자와 발행자가 연인(連印)하고 고본(稿本)을 첨부하여 지방장관(한성부에서는 경시총감으로 한다)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 관청의 문서·도화, 타인의 연설이나 강의 필기를 출판하려는 때와 저작권을 가진 타인의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때는 앞 조의 신청서에 해당 관청의 허가서와 연설자, 강의자, 저작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 허가나 승낙을 얻은 자를 저작자로 간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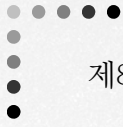
제4조 사립학교, 회사, 기타 단체에서 출판하는 문서·도화는 해당 학교, 회사, 기타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발행자가 연인(連印)하여 제2조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앞 항의 대표자는 저작자로 간주한다.

제5조 제2조의 허가를 얻어서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관청에서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그 관청에서 제본 2부를 내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7조 문서·도화의 발행자는 문서·도화를 판매함으로써 영업하는 자로 한정한다. 단 저작자, 그 상속자는 발행자를 겸할 수 있다.



제8조 문서·도화의 발행자와 인쇄자는 그 성명, 주소,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쇄 연월일을 해당 문서·도화의 말미(末尾)에 기재하고, 인쇄소가 영업상 관용 명칭이 있는 경우 그 명칭도 기재해야 한다. 여럿이 협동하여 발행, 인쇄를 경영하는 경우 업무상의 대표자를 발행자나 인쇄자로 간주한다.

제9조 문서·도화를 재판(再版)하는 경우 저작자나 그 상속자, 발행자가 연인(連印)하여 제본 2부를 첨부하여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개정·증감하거나 주해(註解), 부록, 회화 등을 첨가하려는 때는 제2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서간, 통신, 보고, 사칙(社則), 인찰(引札), 광고, 제예(諸藝)의 차례서(次第書), 제종(諸種)의 용지류(用紙類), 사진을 출판하는 자는 제2조, 제6조, 제7조에 따를 필요가 없다.

단 제11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법에 따라서 처분한다.

제11조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한 저작자, 발행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처단한다.

1. 국교(國交)를 저해하거나 정체(政體)를 변괴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는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3년 이하의 역형(役刑)
2.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2년 이하의 역형
3. 앞 2호의 경우 외에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
4. 기타의 문서·도화를 출판한 때는 1백환 이하의 벌금  
앞 항 문서·도화의 인쇄를 담당하는 자의 벌도 역시 같다.

제12조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도화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문서·

도화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켰다고 인정될 때 내부대신은 그 문서·도화를 국내에서 발매·반포함을 금지하고 인쇄본(印本)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조 내부대신은 본법을 위반하여 출판한 문서·도화의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해당 각판(刻版)과 인쇄본을 압수할 수 있다.

제14조 발매·반포를 금지한 문서·도화인 줄 알면서 발매·반포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출판물로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동 조례에 비추어 처단한다.

#### <부칙>

제15조 본법 시행 전에 이미 출판한 저작물을 재판(再版)할 때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내부대신은 본법 시행 전에 이미 출판한 저작물로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해당 각판이나 인쇄본을 압수할 수 있다.

### 5. 출판규칙(1910년 5월 28일 통감부령 제20호)

제1조 출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출판법, 예약출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동법 중 내무대신이라 함은 통감으로, 내무성이라 함은 통감부로, 지방관청이라 함은 이사청이사관에 해당한다.

제2조 출판법에 따라 내무대신이 발매·반포를 금지한 문서·도화는 한



국에서도 그 발매·반포를 금지한다.

제3조 출판법 중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나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예약출판법 중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6. 신문지법(1907년 7월 24일 법률 제5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은 경무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앞 조의 청원서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호
2. 기사 종류
3. 발행 시기
4. 발행소, 인쇄소
5.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 거주, 연령

제3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은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限)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 3백 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을 확실한 은행의 임치금증서(任寔金證書)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기예, 물가보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신문지는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6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미리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제3조의 요건을 상실한 때는 1주일 이내에 후계자를 정하며,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를 받기까지는 담임자를 임시로 정하여 신고한 후에 발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7조 발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신고해야 하며, 발행정지기간은 1개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 앞 2개조의 청원과 신고는 제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발행허가일이나 신고에 관계된 발행정지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을 넘어서 발행하지 않을 때는 발행허가의 효력을 잃는다.

신고없이 발행을 정지하여 2주일을 넘긴 때도 역시 같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미리 내부와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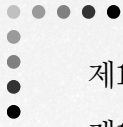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키거나 국제교의(國際交誼)를 저해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 문서나 의사(議事)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상략(詳略)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한 때도 역시 같다.

제13조 범죄를 비호[曲庇]하거나 형사피고인, 범죄인을 구호하거나 상훈(賞恤)을 위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14조 공판에 넘기기 이전이나 공개하지 않은 재판사건을 기재할 수 없다.



제15조 타인을 비방·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제16조 의혹 사항의 기재 여부와 정정, 취소여부로 조건을 만들어 보수를 약속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제17조 신문지는 매호에 제호, 발행시기,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18조 기사에 관해 재판을 받는 때는 그 다음에 발행하는 지상(紙上)에 선고(宣告)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

제19조 관보에서 초록(抄錄)한 사항으로서 관보에서 정오(正誤)할 때는 그 다음에 발행하는 지상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기사에 관해 관계자가 정오(正誤)를 청구하거나 정오서(正誤書), 반박서의 게재를 청구할 때는 다음 회에 발행하는 지상에 기재해야 한다.

정오서, 반박서의 글자수가 원 기사의 글자수에 2배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 글자수에 대해 보통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반박 취지, 단어가 본법으로 게재를 금지한 것과 요구자의 성명, 거주를 명기(明記)하지 않은 자의 요구는 불응할 수 있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하며 발행을 정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22조 보증금은 신문지 발행을 폐지하여 발행허가의 효력을 잃거나 발행을 금지할 때는 반환한다.

제23조 기사에 관해 재판에 부쳐 재판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판비용과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형법 징상처분(徵償處分)에 의거한다.

제24조 보증금으로 재판비용과 벌금에 충당한 때는 발행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전해야 하다. 만약 기일 내에 보전하지 않으면 이를 보전하기까지 신문지 발행을 계속할 수 없다.

제25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그 범죄에 사용된 기계를 몰수한다.

제26조 사회의 질서나 풍속을 괴란하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금고이나 50환 이상 3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제12조, 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금고이나 50환 이상 3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제21조에 기초해 행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50환 이상 3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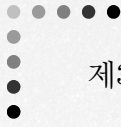
제29조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50환 이상 2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문지를 발행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발행을 계속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신문지로 제5조의 사항 이외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50환 이상 1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환 이상 1백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10환 이상 5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 조언률(造言律)에 따라서 처단되 피해자나 관계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論)한다.



제34조 신문지의 기사에 관해 편집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그 기사에 서명하는 자는 모두 편집인과 함께 그 책임을 지게 한다.

제35조 본법을 어긴 자는 자수감등이죄이상처단례(自首減等二罪以上處斷例)와 수속처분례(收贖處分例)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36조 본법의 규정은 정기발행하는 잡지류에 준용한다.

제37조 본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법 반포 전에 발행하던 신문지는 본법 반포 후 2개월 이내에 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상당한 절차를 행해야 한다.

## 7.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1908년 4월 20일 법률 제8호)

신문지법 제33조 다음에 아래의 각 조를 첨가하고 제34조를 제37조로 하여 차례로 내린다.

제34조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 국한문, 한문 신문지와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국문, 국한문, 한문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한다고 인정할 때는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반포함을 금지하고 해당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다.

제35조 제34조의 금지를 위반하여 신문지를 발매·반포한 내국인은 3백환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내국인이 제34조에 따라서 발매·반포를 금지된 것을 알고 해당 신문지를 수송하거나 배포한 자는 50환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법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 8. 신문지규칙(1908년 4월 30일 통감부령 제12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記載)하여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발행지의 관할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1. 제호
2. 기재 종류
3. 발행 시기
4. 발행소와 인쇄소
5.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주소, 씨명, 연령

편집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주(主)가 되어 편집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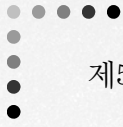
신고한 후 제1항 제1호, 제4호에 정한 사항과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변경할 때는 5일 이전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주소, 씨명을 변경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2조 발행인과 편집인은 겸할 수 없다.

제3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제5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때는 7일 이내에 대신할 자를 정하여 관할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신고를 할 때까지 임시 담당자를 정해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의 휴지(休止)를 하려는 때는 미리 그 기간을 정해 관할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아래에 열거하는 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한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
3. 공권박탈(公權剝奪)이나 정지 중인 자

제6조 발행인은 보증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이사청에 납부해야 한다.

1. 경성, 인천, 부산 1천 원(圓)
2. 앞 호에 열거한 이외의 이사청 소재지 5백 원
3. 앞 2호 이외의 곳 3백 원
4. 1개월에 5회 이하 발행하는 자는 앞 각호의 반액

보증금은 시가(時價)에 준하여 앞 항 각호의 금액에 상당한 공채증서로 대납할 수 있다.

제7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본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고 재판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과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보증금으로 벌금과 재판비용을 충당했을 때는 발행인은 관할 이사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의 결손액을 납부해야 한다.

앞 항의 기일 내에 보증금의 결손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신문지를 발행할 수 없다.

제8조 신문지는 매호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씨명, 발행장소를 게재해야 한다.

제9조 발행인은 발행한 신문지를 통감부와 관할 이사청에 매호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아래 사항은 신문지에 게재할 수 없다.

1. 일한(日韓) 양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고자 하는 사항
2.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고자 하는 사항
3. 공개하지 않은 관청의 문서와 의사(議事)에 관한 사항
4. 공판에 회부되기 전 중죄(重罪)·경죄(輕罪)의 예심에 관한 사항, 방청을 금지한 재판에 관한 사항
5. 형사피고인이나 범죄인을 구호하거나 상훈(賞恤)하거나 범죄를 비호하는 사항

제11조 이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군사, 비밀이 필요한 사항의 게재를 금지할 수 있다.

제12조 신문지가 제10조의 규정과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사관은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차압(差押)하며,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이사관은 한국 내에 수입하는 신문지가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신문지의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차압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관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문지를 차압한다.

1. 제1조와 제3조의 신고를 하지 않고 발행한 것
2.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발행한 것
3. 보증금의 결손액을 납부하지 않고 발행한 것

제15조 신문지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본인이나 관계자로부터 취소나 정오(正誤)를 위해 게재를 요구하는 문서는 다음 회나 제3회 발행의 지상(紙上)에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 취소서, 정오서(正誤書)의 글자수가 원문의 2배를 초과할 때는 초과 글자수에 대해 그 신문지가 정한 보통광고료와 동일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관보나 다른 신문지에서 전재(轉載)하거나 초록(抄錄)한 사항에 관해 관보나 신문지에 취소서, 정오서의 게재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다음 회나 제3회 발행의 지상에 게재해야 한다.

취소서나 정오서는 원문과 같은 호의 활자를 쓰며 같은 난내(欄內)의 머리부분[首部]에 게재해야 한다.

제16조 취소서, 정오서의 취지, 단어로써 본칙에서 게재를 금지당한 사항에 관한 것일 때나 요구자의 주소와 씨명을 명기(明記)하지 않았을 때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신문지에 게재한 사항에 관해 재판을 받았을 때는 다음 회 발행의 신문지에 판결서의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

제18조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신문지에 게재한 사항에 기명(記名)한 자는 편집인과 같이 책임을 진다.

신문지에 게재한 사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신문지에 기명한 편집인 외에 다른 편집인이 있음이 증명될 때 해당 편집인은 그 신문지에 기명한 편집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임시 담당자는 본칙에 정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19조 제1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발행인을 1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칙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허위 사항을 기재한 때는 발행인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경금고(輕禁錮)나 2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문지를 발행하거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행인을 1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발행인, 편집인을 20원 이

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한 때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제11조의 명령을 위반한 사항을 게재할 때는 발행인, 편집인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제10조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재할 때는 발행인, 편집인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제16조의 경우 사적인 일[私事]에 관한 것은 피해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제26조 본칙의 규정은 잡지·통신류에도 준용한다.

#### <부칙>

제27조 본칙은 19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종래 발행하던 신문지, 잡지, 통신류의 발행인은 본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본칙에 정한 수속을 해야 한다.

### 9. 신문지규칙 중 개정(1909년 8월 30일 통감부령 제22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記載)하여 발행지를 관할하는 이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

#### 1. 제호



2. 기재 종류
3. 발행 시기
4. 발행소와 인쇄소
5.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주소, 씨명, 연령

편집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주(主)가 되어 편집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주소, 씨명, 연령을 기재한다.

인가를 받은 후 제1항 제2호, 제4호에 정한 사항과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주소와 씨명을 변경할 때는 이사관의 인가를 받으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주소, 씨명을 변경했을 때는 5일 이내에 발행지의 관할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1조의 2 발행 시기로부터 50일을 경과하도록 발행하지 않을 때는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제1항 중 「관할 이사청에 신고해야 한다」를 「이사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할 때까지」를 「인가를 받을 때까지」로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발행인은 제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때는 보증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인가서 교부와 동시에 관할 이사청에 납부해야 한다.

1. 경성, 인천, 부산과 그 구역 밖 2리(里) 이내의 곳에서는 2천 원
2. 앞 호에 열거한 이외의 이사청 소재지와 그 구역 밖 1리 이내의 곳에서는 1천 원
3. 앞 2호 이외의 곳에서는 5백 원
4. 1개월에 5회 이하 발행하는 것은 앞 각호의 반액

제12조 중 「금지한다」를 「인가를 취소한다」로 개정한다.

제14조 중 제1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제1항, 제3항, 제3조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제1조 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발행한 것

제18조 편집인의 책임에 관한 본칙의 규정은 아래에 열거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1. 편집인 이외 실제 편집을 담당한 자
2. 게재 사항에 서명한 자
3. 취소서, 정오서의 사항에서는 그 게재를 청구한 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에 관한 본칙의 규정은 제3조 제2항의 임시담당자에게 준용한다.

제19조 제1항 중 「제5조」 다음에 「제7조 제3항」을 더하고, 제2항 중 「신고를 하고」를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로 개정한다.

제20조 삭제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래 발행한 신문지, 잡지, 통신류로서 종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이미 납부한 것과 올해 9월 30일까지 납부한 것은 본령에 따라서 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6조의 보증금은 본령 시행일로부터 3개년 간에 보전케 한다. 3개년을 경과하여도 보전하지 않을 때는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 10. 신문지규칙 중 개정(1909년 10월 23일 통감부령 제35호)

제9조 중 「통감부, 관할 이사청」을 「통감부, 관할 이사청, 관할 지방재판소검사국」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령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집회취체령(1910년 8월 23일 경무총감부령 제3호)

당분간 정치에 관한 집회와 옥외에서 다중의 집회를 금지한다.

본령을 위반하는 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본령은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 12. 조선태형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할 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자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서 일정한 주소를 갖지 아니할 때
2. 무자산(無資産)으로 인정될 때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언도를 받은 자로서 언도를 확정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을 때는 검사나 즉결관서의 장(長)은 그 정상에 따라 태형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答數)에 상당한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태형을 면(免)한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과료를 태형으로 대신할 경우



- 1일 또는 1원을 태 1대로 한다. 1원 미만은 이를 태 1대로 계산한다.  
 단 태는 5 이하로 할 수 없다.
- 제5조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과할 수 없다.
- 제6조 태형은 태로써 불기[髻]를 때려 집행한다.
- 제7조 태형은 태 30 이하로 1회 집행하고, 30을 넘을 때마다 1회를 더한다. 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 태형 언도를 받은 피고인으로서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갖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나 즉결관서의 장(長)은 이를 감옥이나 즉결관서에 유치할 수 있다.
- 제9조 태형 언도가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옥이나 즉결관서에 유치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형(換刑) 처분을 받은 자도 역시 같다.
- 제10조 검사나 즉결관서의 장은 수형자의 심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인해 태형을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3개월 이내에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3개월을 초과하고도 아직 태형을 집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집행을 면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유예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앞 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 태형은 감옥이나 즉결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 제12조 태형의 시효는 각 본형(本刑)에 대해 정해진 예에 따른다.
-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조선태형령시행규칙(1912년 3월 19일 조선총독부령 제23호)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 의사에게 매회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시켜 그 건강이 태형을 받는데 감내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집행을 유예한다. 단 의사에게 진찰을 시킬 수 없을 때는 입회 관리의 인정으로 즉시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조 집행을 유예하여 수형자를 유치(留置)하지 않을 때는 이로 하여금 주거 장소를 정하여 지정한 기일에 출두할 것을 맹세시키고 또 상당한 보증인을 세우게 한다.

제3조 태형을 집행 중 수형자의 심신이나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1조의 수속을 하게 한다.

제4조 태형을 면하거나 태형의 집행을 면하는 처분은 검사나 즉결관서의 장(長)이 정한다.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간수장이나 즉결관서의 장, 그 대리관 입회하에 수형자에게 태형을 집행할 것과 아울러 그 태수(笞數)를 고지(告知)한 후 소속관서의 이원(吏員)에게 이를 집행하게 한다.

제6조 태형의 집행은 대제축일(大祭祝日), 1월 1일, 1월 2일, 12월 31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하지 못한다.

제7조 태형의 집행 중에는 집행에 종사하는 자 이외는 그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태형의 집행을 받을 자가 동시에 2인 이상일 때는 1인씩 집행하고 그 사이 다른 수형자는 집행장소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제9조 태형의 집행이 2회 이상일 때는 연이어[連日] 집행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 격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 태형의 집행을 마쳤을 때 입회 관리는 그 시말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다.

제11조 태는 길이 1척(尺) 8촌(寸), 두께 2푼(分) 5리(厘), 넓이 중 태두(答頭) 7푼, 태병(答柄) 4푼 5리로 한다. 죽편(竹片)으로 만들고 소절(疎節)을 삭제하여 마(麻)로 종(縱)으로 이(裏)한다. 태두는 편두(片頭)에 단여(斷餘)를 1촌 2푼 남기고 태병은 2푼을 남기어, 마사(麻絲)로 치밀하게 외부를 가로로 묶고[橫纏], 묶음[纏]마다 등에서 매듭을 지어 1조능(條稜)을 만들어 5촌의 천조각[布片]으로 태병을 싼다. 외경(外徑) 태두 2촌 3푼, 태병 1촌 5푼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조선태형령 폐지의 건(1920년 3월 31일 제령 제9호)

조선태형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령은 19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태형령에 의해 태형에 처해지거나 벌금·과료를 태형으로 돌리고[換] 그 집행을 종료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15.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1919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공동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형법 제2편 제2장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본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앞 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발각 전에 자수하였을 때는 그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

제3조 본령은 제국 밖에서 제1조의 죄를 범한 제국신민에게도 적용한다.

## VIII 토지·임야 수탈

### 1. 토지수용령(1911년 4월 17일 제령 제3호)

제1조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본령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만 한다.

1. 국방 기타 군사와 관련한 사업
2. 관청 또는 공공건물 건설과 관련한 사업
3. 교육·학예 또는 자선과 관련한 사업
4. 철도·궤도(軌道)·도로·교량·하천·제방·사방(砂防)·운하·용수로·저수지·선거(船渠)<sup>1)</sup>·항만·부두·수도·하수·전기·가스·화장장과 관련한 사업
5. 위생·기후관측·항로표식·방풍(防風)·방화(防火)·수해예방 기타 공공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설하는 사업

제3조 토지와 관련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 사용과 관련한 권리 및 공

---

1) 선박 건조나 수리를 위한 구조물



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본령에 준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조선총독부가 이를 인정한다.

조선총독부는 앞 항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사업의 종류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세한 항목을 공고한다.

제5조 사업자는 제4조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한다. 다만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계할 때에는 궁내대신 또는 주무관청에서 조선총독과 협의한다.

제6조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시행하게 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부윤 또는 군수는 그 사업을 인정할 수 있다.

앞 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항을 인정하면 사업자는 즉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 관계자가 입게 될 손실은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

제8조 제4조의 공고가 있으면 사업자는 그 토지와 관련하여 수용 및 사용 권리를 얻기 위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제8조의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사업자는 지방장관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시에 관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제6조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제21조의 손실 보상에 대해 협의를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지방장관은 재결 또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정인·사실참고인·사업자 또는 관계자를 불러 그 의견 또는 공술(供述)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 또는 관계자는 지방장관의 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결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의 재정(裁定)을 요청할 수 있다.

앞 항의 재정을 요청할 경우라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13조 제4조의 공고가 있는 다음, 사업자가 2년 내에 토지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때는 사업 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지방장관의 재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이다.

제14조 토지의 사용이 5년 이상을 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 관계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하는 토지에 있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여 이전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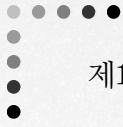
앞 항의 이전료로, 그 물건의 상당하는 가격을 넘을 경우에 사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4조의 공고가 있는 다음에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대적인 수리를 하거나 물건을 추가 증축한 관계자는 이에 관련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방장관의 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감정인 및 사실참고인의 여비·수당, 기타 심사와 관련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 토지물건을 수용할 때에 수용 시기에 소유권은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고 그 토지물건과 관련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토지를 사용할 때에 그 권리는 사용 시기에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고 그 토지에 따른 다른 권리의 행사는 사용 기간 중 정지된다. 다만 사용을 방해하는 자는 여기서 예외이다.



제19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외에 사업자는 수용 또는 사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관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지불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해야 한다. 관계자는 수용 또는 사용 시기까지 토지를 사업자에게 인도 및 물건을 이전하거나 인도해야 한다.

제20조 사업자가 제19조의 지불 또는 공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정·재정 및 지방장관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할 수 없다.

제21조 제4조의 공문이 있는 다음,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변경함에 따라 관계자가 입을 손실은 사업자가 보상한다.

제22조 사업자의 과실 없이 관계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관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면장(面長)은 관계자를 대신해 이를 처리한다.

제23조 의무자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는 데에도 일정 기간 내에 끝마칠 전망이 없을 때에 지방장관은 직접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에 따를 수 없을 때에 지방장관은 직접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제24조 제17조 및 제23조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제11조의 호출을 받은 감정인 또는 사실 참고인이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5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 감정인이 허위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사업과 함께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에 따라 행한 수속 기타 행위는 사업자 또는 관계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갖는다.

제28조 본령에서 사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다.

본령에서 관계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수용 또는 사용해야 할 토지물건의 소유권자 및 그 토지물건과 관련해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의 공고가 있는 다음에 그 토지물건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는 여기서 예외이다.

제29조 본령에 규정한 것 외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1. 사업 준비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경우와 관련한 사항
2. 2개 이상의 행정구획에 걸친 사업에 대해 지방장관의 인정·재결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와 관련한 사항

<부칙>

본령 시행의 지역과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2. 토지수용령시행규칙(1911년 6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80호)

제1조 토지수용령 제5조의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 및 관련 있는 토지의 구역을 정해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토지의 현장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궁내성(宮內省)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계할 때에는 궁내대신 또는 주무관청은 이를 지방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의 공고가 있는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 준비를 위해 그 토지의 현장 측량 및 조사를 할 경우 앞 항의 허가는 통지가 필요 없다.

제2조 지방장관은 제1조 제1항의 허가를 내주거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업자·사업의 종류 및 관련 있는 토지의 구역을 공고하고, 이를 그 토지의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 사업자는 토지에 들어가 현장 측량 및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들어가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그 토지의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는 측량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권자 및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는 토지 현장 측량 및 조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경우 지방장관에게 받은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자는 토지에 들어가 현장 측량 및 조사를 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미칠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제7조 토지수용령 제5조의 신청 또는 협의에는 사업계획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세한 항목 조사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 토지수용령 제6조의 인정(認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기간을 정해, 부윤이나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윤 또는 군수가 인정하면 사업자·사업의 종류·사용할 토지의 구

역 및 사용기간을 토지의 소유권자 및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토지수용령 제4조의 공고가 있는 다음에 사업을 폐지·변경함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 사업자는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선총독은 앞 항의 신고를 받으면 이를 공고한다.

제10조 사업자는 토지수용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裁決)을 구하고자 할 때에 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기(軍機)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다.

1. 사업계획서 및 도면

2.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위치·지목(地目)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면적 및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종류·수량. 다만 토지·건물이 분할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전체 면적·건평 등을 병기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견적금액 및 내역

수용 시기 또는 사용 시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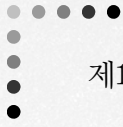
관계자의 성명·주소

지방장관은 앞 항의 서류를 받으면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관계자는 제10조 제2항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지방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방장관은 전 조의 기간을 경과한 뒤 2주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앞 항의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 조선총독은 지방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토지수용령 제9조의 재결, 제10조, 본령 제6조 제2항의 결정은 문서를 바탕으로 행하고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지방장관은 재결이나 결정을 할 때에 재결서나 결정서의 등본을 사업자와 관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5조 사업자나 관계자는 토지수용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이나 결정을 하는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앞 항의 경우에 지방장관은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서류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감정인과 사실참고인의 여비, 수당은 아래 범위에서 지방장관이 정한다.

기차운임 - 1마일(약 1.6km) 4전 이상 10전 이하

선박운임 - 1해리(海里) 5전 이상 15전 이하

육상이동 교통비 - 1리<sup>2)</sup> 30전 이상 70전 이하

수당 - 하루 10전 이상 6원 이하

제17조 토지수용령 제6조에 따라 인정해야 할 사업으로, 2개 이상의 부(府)·군(郡)에 걸쳐 있을 때는 관련 지역의 부윤·군수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재결이나 결정을 해야 할 사업으로, 2개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을 때는 관계 지방장관은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해야 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방장관은 지휘를 해야 할 경우에 그 사업이 2개

---

2) 리 : 일본의 1리는 약 3.9km - 옮긴이

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때도 앞 항과 마찬가지로이다.

제18조 사업자가 제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에 들어간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 토지수용령 제4조의 공고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시행한다. 본령에 따라 지방장관이 해야 할 공고는 보도를 통해 시행한다. 또한 지방관청의 게시판과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3. 토지조사령(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

제1조 토지의 조사와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地目)을 정해 지반을 측량하고 한 구역마다 지번(地番)을 붙인다. 다만 제3호에 기재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1. 논·밭·터·늪지·임야·잡종터
  2. 사찰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3. 도로·하천·도랑·제방·성첩(城堞)·철도선로·수도선로
-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와 측량을 해야 할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사이에 자리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지반의 측량에서는 평(坪)이나 보(步)를 지적(地積)의 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권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지목·자번호(字番號)·사표(四標)·등급·지적·결수(結數)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



만 국유지에 있을 경우에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권자,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방 경계에 표식을 세워, 지목과 자번호 모두 민유지에 있을 경우 소유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국유지에 있을 경우 보관관청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그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지주에게 두 명 이상의 총대(總代)를 선정하게 하여 조사 및 측량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필요할 때에 담당 관리는 토지의 소유권자, 이해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실지(實地)로 부르거나 토지와 관련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해 필요하다면 담당 관리는 관련 토지에 직접 가서 측량표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에 담당 관리는 미리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의 재정(裁定)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의 소유권자 및 그 경계를 사정(査定)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앞 항의 사정을 실시할 때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제10조 제9조 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 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토

지에 대해서는 그 사정 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 제9조 제1항의 사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제9조 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입회를 하지 않은 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이해 관계자·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가 첨부된 문서를 통해 해야 하며 그 등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앞 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제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해 임시토지조사국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제15조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사정(査定)하여 확정하거나 재결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사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벌받아야 할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1.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바탕으로 사정 또는 재결이 있었을 경우
2. 사정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만들어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한다.

제18조 제4조의 사항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7조 또는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3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처분·수속·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령 제6호)

제1조 토지조사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토지 소유자가 별기(別記) 제1호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또는 출장 담당 관리에게 제출하게 한다.

토지 소유자가 앞 항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조 토지조사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 관리는 토지에 직접 가서 측량표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토지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지고 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 및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토지조사령 제9조 제2항의 공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및 토지가 소재한 도(道)의 도보(道報)에 게재해야 하며, 지방관청의 게시판과 적당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토지조사령 제9조 제1항의 사정(査定)을 실시할 때에 그런 사실을 공시하는 것 외에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와 지도를 토지가 소재한 부군(府郡)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뜻을 공시해야 한다.

제5조 토지조사령 제4조의 신고나 통지 후, 토지조사령 제9조 제2항의 공시 날짜까지 그 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보관관청은 별기(別記) 제2호 내지 제7호 양식에 따라 즉시 그 뜻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신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1.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이동(異動)을 가져왔을 경우
2.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3.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로 묶을 경우
4. 지목을 변경할 경우
5. 민유지에서 국유지가 되거나 국유지에서 민유지가 되었을 경우
6.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 기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앞 항의 신고서에는 토지가 소유한 곳의 동장(洞長)·이장(里長)의 증명도장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또는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제3조의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3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8조 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 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 또는 방목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앞 항에 규정하는 출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조선총독은 제8조의 현지 주민에게 그 출입구역에 삼림조성을 명령할 수 있다.

앞 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사업을 성공하였을 때 그 토지를 양여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총독은 현지 주민에게 국유삼림의 보호를 하게 하여 보수로 그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앞 항의 삼림보호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이 연대책임을 진다.

현지 주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삼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또는 이민단체(移民團體)의 일을 돕기 위해 필요할 때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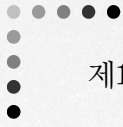
제12조 국유삼림의 양여를 받는 자는 그 양여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 삼림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제13조 조선총독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유삼림의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2.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건축수리 재료 또는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앞 항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삼림 손질을 위해 고용하는 현지 주민에게 보수로 그 채취하는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대부 또는 그 산물 매각에 관한 방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5조 지방장관은 삼림의 사용이익에 관한 폐해를 교정하거나 해충을 구제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 조선총독은 삼림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 제9조 또는 제10조의 현지 주민에게 공동으로 삼림 보호 또는 삼림조성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7조 조선총독은 본령에 규정하는 직권의 일부를 지방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경찰 관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 또는 이에 근접한 토지에 화기(火器)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제19조 다른 사람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삼림을 불태워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삼림에서 그 산물을 훔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앞의 제19조, 제20조의 미수죄도 처벌한다.

제22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삼림조성 명령 또는 삼림운영 방법의 지정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삼림에서 실수로 불을 내거나 함부로 모닥불을 피우는 자.

5.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삼림을 개간하는 자.

제23조 다른 사람의 삼림에 설치된 표식을 이전하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자는 5십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령을 통해 들판·산악, 기타 토지에 대해 본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조 본령의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26조 1908년(隆熙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은 폐지한다.

제27조 본령의 시행 때 실제로 보안림에 해당하는 삼림은 본령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본령의 시행 전에 설정된 부분림(部分林)<sup>3)</sup>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앞 항의 부분림에 대해서는 제7조의 대부(貸付)를 받아 부분림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29조 본령 시행 전 오랫동안 금양(禁養)한 국유삼림은 제7조의 대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구 법령에 따라 성립된 국유삼림 산야의 대부, 산물의 매각은 본령에 따른 대부, 매각으로 간주한다.

## 6. 삼림령시행규칙(1911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유삼림에 대해 아래의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장관이 처리해

---

3) 국유림을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삼림조성을 하여 그 수익을 국가와 계약자가 나누어 갖는 임야



야 한다.

1. 면적 30정보(町步)를 넘지 않는 일시 대부 또는 면적 5정보를 넘지 않는 계년기(繼年期) 대부.
2. 보안림 이외의 삼림의 산물로 재적(材積) 5백 척, 체가액(締價額) 50원을 넘지 않는 것의 처분.
3. 도벌(盜伐), 소손(燒損), 고손(枯損), 기타 피해와 관련한 산물의 처분.

지방장관은 앞 항의 대부 또는 산물의 처분을 할 때에 직접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조 국유삼림의 매각·교환·양여·대부 또는 그 산물의 연한(年限) 매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면을 첨부하여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에게 출원해야 한다. 그 대부 또는 연한 매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앞 항의 출원인 또는 그 출원에 근거한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제2조의 출원인(出願人) 또는 계약 당사자가 조선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거주소를 정해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출원인 또는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 앞 항의 규정은 그 대표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 삼림령 또는 본령에 규정하는 삼림·토지·입목(立木)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과 함께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 삼림령 또는 본령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하는 수속 기타의 행위는 삼림·토지·입목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의 승계인에게 그 효력을 갖는다.

제6조 삼림령 또는 본령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선총독부 관보 또는 지방관청의 공포식(公布式)에서 이를 공시한다. 그 공시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할 때에는 그 마지막 날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

제7조 삼림령 및 본령은 산야에 이를 근거로 적용한다.

삼림령 및 본령 중 보안림에 관한 규정은 삼림산야 이외의 토지에 이를 근거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삼림령 제4조, 제18조, 제23조, 본령 제9조, 제10조, 제39조, 제43조의 규정을 근거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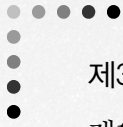
제8조 영림창(營林廠) 소관 삼림의 산물 매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 제2장 보안림(保安林)

제9조 보안림의 편입 또는 해제는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한다.

제10조 보안림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가 변경되거나 기타 지형 또는 임상(林相)에 눈에 띄는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는 지체 없이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 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신규(新舊) 권리자의 연서(連署)가 필요하다.

제11조 삼림령 제5조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제3장 국유삼림의 대부(貸付)

제12조 국유삼림의 대부를 받는 자는 직접 경계표(境界標)를 세워야 한다.

제13조 국유삼림의 대부를 받은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에 명시한 내용을 제외한 것 외에 기타 산물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 삼림조성을 목적으로 국유삼림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삼림의 천연 어린 나무는 조성을 마쳤을 때 빌린 사람의 소유로 한다.

제15조 국유삼림을 빌린 사람은 대부지(貸付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선총독 또는 지방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6조 국유삼림을 빌린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삼림을 전대(轉貸)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2. 삼림조성 또는 목축을 위해 대부를 한 경우에 사업진척이 없거나 성공할 전망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경우
3. 법령 또는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착오로 대부하였을 경우
5. 공용 또는 공익사업 용도로 제공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앞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대부지의 반환을 명령할 때에는 빌린 사람에게 그 대부지에서 얻은 부당이익의 반환, 입목의 기권 또는 공작물의 철거, 기타 원상복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제4호 또는 제5항에 따라 대부지를 반환하게 할 때에는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 제4장 국유삼림과 그 산물의 매각

제18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삼림의 주산물을 그 종류 및 수량을 지시하여, 10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에 매년 분할 인도하는 방법에 따라 연한 매각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경우
2. 특별한 설비를 마련할 때에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하게 증진해야 할 경우

제19조 연한 매각을 받은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국유삼림 또는 그 산물에 대해 매각허가를 받은 자는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지정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 또는 대금 10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앞 항의 계약보증금은 산물 매각의 경우에는 그 산물의 반출을 마칠 때까지 이를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주산물인 나무의 그루터기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물건 중에 포함할 수 없다.

제22조 연한 매각의 경우 조선총독은 매년 인도해야 하는 주산물의 종류·수량·대금·작별(斫伐)한 곳,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매수인(買受人)에게 통지한다.

담당 관리가 측정한 앞 항 주산물의 수량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매수인은 앞 항의 측정에 입회할 수 있다.

제23조 매수인은 매각 물건의 인도 또는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물



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제24조 매각 물건의 수량·품질 또는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연한 매각의 경우에 영림(營林)계획서의 변경에 따라 매각 물건의 수량 또는 작별 면적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5조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은 영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산물의 매수인에 대한 벌채·채취 또는 반출의 방법을 지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은 산물 매수인이 포기한 물건이 삼림조성에 현저히 장애가 있다고 확인하였을 때 매수인에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은 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벌채·채취 또는 반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되었을 때 그 물건을 차압하거나 벌채·채취 또는 반출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8조 매각한 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 기간은 주산물의 경우는 인도 후 3년 내, 부산물인 경우는 채취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지정한다.

매수인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정된 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마치지 못하면 그 출원에 따라 특별히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산물의 매수인이 그 반출 또는 채취 또는 제26조에 규정한 삼림조성 장애물의 제거를 마쳤을 때에는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0조 산물의 매수인이 지정된 기간 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수의(隨意)계약에 따른 산물의 매수인은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

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반출 또는 채취하지 않은 산물 또는 연한 매각계약에 따라 생긴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은 삼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매수인이 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앞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에 계약보증금은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고 계약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매각 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33조 특별히 용도를 정해 국유삼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 또는 양여를 받는 자는 조선총독 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매각 대금의 반액 또는 물건에 상당하는 가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연한 매각을 한 다음에 법령의 결과 또는 공용 및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이 작벌(斫伐)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대금 납부를 마친 물건으로 앞 항의 제한·정지 또는 금지에 따라 작벌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하는 대금을 환급하고 그 산물은 국가 소유로 한다.

## 제5장 국유삼림의 입회 및 보호

제35조 삼림령 제8조의 입회관행이란, 현지 주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국유삼림의 일정한 구역을 오랫동안 마을용 또는 개인용으로 제



공하여 산물의 채취 또는 방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삼림령 제10조에 따라 국유삼림의 보호를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화재 예방 및 진압
2. 도벌(盜伐)·침간(侵墾) 기타 가해 행위의 예방 및 방지
3. 유해동물의 가해 예방 및 구제
4. 경계표 기타 표식의 보존
5. 어린 나무의 보육
6. 앞의 내용 외에 삼림의 보호와 관련해 지방장관이 명령하는 사항 앞 항의 의무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삼림 손질을 위해 벌목하거나 가지를 채취할 수 없다.

제37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6조의 의무자는 즉시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보호해야 할 삼림 또는 그 나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삼림 손질 기타 명령받은 행위를 마쳤을 경우

제38조 아래에 기재한 산물은 제36조의 의무자의 소득으로 삼는다.

1. 고목, 쓰러진 나무와 가지
2. 삼림 손질을 위해 벌채한 나무와 잔가지
3.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앞 항 외에 지방장관은 특별히 개인용 또는 마을용으로 제공해야 하는 산물을 양여할 수 있다.

## 제6장 삼림경찰

제39조 경찰 관리는 삼림령 제18조에 따라 화기를 허가할 때에는 화기반입 허가증을 교부한다.

앞 항의 허가증은 화기반입자가 화기를 반입할 때 휴대한다.  
제40조 화기반입 허가를 받은 자는 가고자 하는 삼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그 기일을 통지한다.  
제41조 그 밖에 불길의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경찰 관리는 화기반입자에게 화기 반입방법 또는 그 기일의 변경을 명령하거나 상당하는 설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 제7장 벌 칙

제42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2. 제17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41조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
  3. 제25조, 제34조 제1항의 지정, 제한, 정지, 금지를 위반하는 자.
- 제43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9조, 제37조, 제39조 제2항,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 <부칙>

제44조 본령은 삼림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45조 국유삼림 산야 및 산물 처분 규칙, 국유삼림 산야 부분림 규칙 및 삼림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46조 삼림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앞 항의 차수인(借受人)은 삼림령 제7조의 양여를 받고자 할 때에 도면을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7. 조선임야조사령(1918년 5월 1일 제령 제5호)

제1조 임야의 조사와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따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에 따른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량하고 기타 지목(地目)을 정해 한 구역마다 지번(地番)을 부여한다.

제3조 임야의 소유자는 도(道)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주소 그리고 임야의 소재 또는 지적(地積)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한다.

국유임야에 대해 조선총독이 정한 연고(緣故)를 가진 자는 앞 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연고까지도 신고해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에 대해서는 보관관청 조선총독이 정한 대로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부윤 또는 면장은 조선총독이 정한 대로 임야의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임야의 조사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와 통지서를 첨부해 도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府)와 면(面)은 앞 항의 조사와 측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한 대로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임야의 조사와 측량을 위해 필요할 때에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2명 이상의 총대(總代)를 선정하여 조사와 측량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임야의 조사와 측량을 위해 필요할 때에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국유임야의 연고자·이해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현지로 들여보내거나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임야의 조사와 측량을 위해 필요할 때에 담당 관리 또는 공무원은 토지에 들어가 측량표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앞 항의 경우에 담당 관리 또는 공무원은 사전에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권자 또는 점유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도장관의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査定)한다.

도장관은 사정을 위해 필요할 때는 임야의 조사와 측량을 다시 할 수 있다.

제6조,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앞 항의 조사와 측량에 근거로 한다.

도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정을 실시할 때는 30일간 공시한다.

제9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정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 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그 사정 당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1908년(隆熙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 신고를 하지 않아서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사정해야 한다.

제11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제8조 제4



항에 정한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재결(裁決)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회를 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제외한다.

제12조 임야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이해관계자·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첨부한 문서로 작성하여 그 등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교부한다.

앞 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제14조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해 도장관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따라 확정한다.

제16조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증거불충분 외의 이유로 형사소송 수속을 개시 또는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1. 처벌받을 행위에 근거하여 사정 또는 재결을 하였을 경우
2. 사정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제17조 도장관은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작성하여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을 거친 사항을 여기에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6조, 제8조 제3항,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 조선총독은 임야 안에 있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본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앞 항의 토지 지목을 정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적용한다.

#### <부칙>

본령은 19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 전에 도장관이 실시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과 관련한 수속이나 기타 행위로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구(地區) 내의 임야에 관여하는 자는 본령에 따른 것으로 간주한다.

### 8.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년 5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38호)

제1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진 국유임야에 대해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1. 옛 기록(古記) 또는 역사적으로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2.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 신고를 하지 않은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의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
3. 개간·목축·삼림조성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해 임야를 벌린 자



4.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 합법적으로 점유하여 계속 금양(禁養)을 한 자
5. 국유임야에 입회 관행을 가진 자
6. 부분림의 분수(分收) 권리를 가진 자

제2조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의 신고 및 통지는 한 구역마다 제1호 양식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윤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가 앞 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자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국유임야의 보관관청은 보존이 필요한 삼림인지 불필요한 삼림인지 조사를 마친 임야를 제외한 국유임야에 대해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임야의 소유권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는 도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임야의 사방에 표식을 세워, 민유지 또는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의 경우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의 경우에는 보관관청명을 여기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보존이 필요한 삼림인지 불필요한 삼림인지 임야구분조사를 마친 국유임야 및 조선임야조사령 부칙 제2항의 임야는 여기서 제외한다.

임야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공유한다는 점,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의 경우에는 연고자라는 점을 표식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에 따라 부윤 또는 면장이 조사해야 할 임야는 조선임야조사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 외에 있는 민유임야 및 연고자가 있는 국유임야로 한다.

제6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4항의 공시는 임야조사서 및 도면을 임야가 소재한 부(府)·군(郡)·도(島)의 청사에 비치하여 30일간 자유

롭게 열람하게 한다. 이 내용을 조선총독부 관보 및 임야가 소재한 도의 도보(道報)에 게재해야 한다.

제7조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의 신고 또는 통지 후,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4항의 공시일까지 그 임야에 대해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임야의 소유권자, 국유임야의 연고자 또는 보관관청은 제2호 양식에 따라 부윤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도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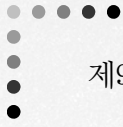
1. 임야의 소유자 또는 연고자에 이동(異動)이 있을 경우
2. 1필지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3. 여러 필지의 임야를 통합할 경우
4. 지목을 변경할 경우
5. 임야의 소유권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가 그 성명 또는 명칭·주소를 변경할 경우

임야의 소유권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이동 신고서 또는 통지서에는 전 소유자 또는 전 연고자와 연서(連署)하여 임야 소재지의 부윤·면장의 증명도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유지가 국유지로 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한다.

임야의 수용, 경매,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전 소유자의 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전 소유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사망하여 그 연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 또는 통지서의 여백에 부기(附記)해야 한다.

제1항 제5호 중 성명 또는 명칭 변경의 신고서에는 호적·민적(民籍) 또는 등기의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 도장관은 제7조의 신고 또는 통지에 근거하여 이동(異動)을 조사·정리해야 한다.



제9조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규정한 임야의 사정(査定)을 청구하는 자는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의 신고와 동시에 그 내용을 도장관에게 출원해야 한다.

제10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 또는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임야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계 또는 1필지의 일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실측도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명칭, 주소
2. 신청지의 소재, 지번, 면적
3. 신청사유

제11조 조선임야조사령 제13조의 공시는 재결서의 등본을 임야 소재의 부·군·도의 청사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게 한다. 그 내용을 조선총독부관보와 토지가 소재한 도의 도보(道報)에 게재해야 한다.

제12조 도장관이 조선임야조사령 제17조에 따라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임야가 소재한 부·군·도에 인계해야 한다.

제13조 부·면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조선임야조사령 제4조 제2항의 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제7조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생략)